

최근 오바마 정부가 선언한 행정조치 유예와 관련하여 범죄기록이 있는 젊음이들의 행정조치 유예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조치 유예 신청인의 범죄 전과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범죄, 심각한 경범죄, 또는 3회 이상의 일반적인 경범죄 (미미한 교통 법규위반은 제외) 전과가 있다면 행정조치 유예를 받을 자격이 없다. 물론 미국 국토 안보부가 신청인의 범죄 전과를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한다면 범죄 전과가 있어도 신청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토 안보부에서 어떠한 범죄 전과를 예외상황으로 간주할



이동찬

이민 변호사

수 있다.

시의 법규를 어긴 경우에도 5일 미만의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역시 이민국에서 전체 상황을 고려하

록을 말소되지 않은 범죄 기록과 동일하게 취급하였으나 행정조치 유예 신청 경우 다른 방침을 따름으로서 전과 기록이 있는 신청인에게 추방 유예 판결을 위해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그리고 행정유예 조치를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식 I-821D에 보면 “신청인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체포나 기소를 당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적이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 있다.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의 판례 중 해외 범죄를 어떻게 중범죄와 경범죄로 구분하는지 설명은 있지만 국토 안보국은 행정유예 조치를 신청했을 때 해외의 중범죄 또

행정조치 유예와 범죄 전과

것인지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범죄가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분류되는 기준은 연방법에 따른다. 그러므로 주법으로 분류하는 중범죄, 경범죄는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연방 법의 중범죄는 1년 이상의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경범죄는 5일이상 1년 미만의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인 데 주법으로 분류한 경범죄가 1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중범죄로 간주된다. 이는 다소 복잡한 케이스 스터디를 요구하므로 단순히 연방법전과 주의 형법책을 읽는다고 해서 쉽게 나오는 답은 아니다.

심각한 경범죄는 형량을 불문하고 주거침입, 가정 폭력, 성범죄, 불법 종기 소지 또는 사용죄, 음주운전, 그리고 마약 거래를 포함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형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심각한 경범죄로 간주된다. 그리고 경범죄로 90일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다면 그 경범죄는 심각한 경범죄가 될

였을 때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연방법을 위반해 단순한 티켓을 받았던 것도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일단 범죄 전과가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민국은 청소년 시절의 범죄 기록에 대해 case by case로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심사의 기준은 대략 개개인의 특정 상황, 즉 겸찰족의 기소 재량권, 전과자의 간생여부와 정상 참작의 증거가 있는지가 되겠다.

청소년 범죄 전과가 성인의 기준으로 심각한 경범죄로 간주된다면 행정조치 유예가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지만 성인 범죄자로 분류되어 성인의 기준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범죄를 성인 범죄와 같이 다루고 청소년 시절을 참작한 case by case 심사는 하지 않는다.

말소된 청소년 범죄 기록 보유자 역시 case by case 기준으로 심사될 것이다. 그 동안의 이민국은 말소된 범죄 기

는 경범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국토 안보부가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그 나라 법의 최고 형량으로 중범죄와 경범죄를 결정할지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결정할지이다. 이는 행정유예 조치가 형사관련 기록에 있어서는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는 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행정유예 조치 신청을 하고 싶은데 범죄 기록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쩌면 행정조치 유예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더 이득일 수도 있으므로 이민 변호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유예 조치가 정식으로 통과된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 행정유예 조치는 언제든지 미국 정부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현재 행정유예 조치에 해당하거나 자격이 의심스럽다면 신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213)291-9980